

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안내





목 차

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

CONTENTS

-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추진배경
- 대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
- 2024년 태양광 경쟁입찰 주요 개선사항
- 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주요 사항



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추진배경

I.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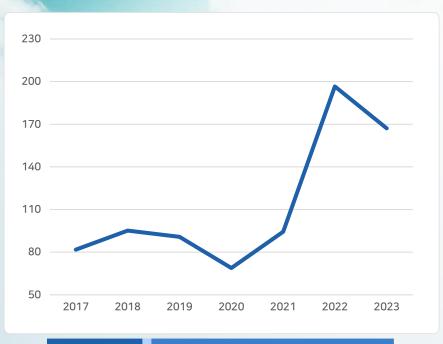
- ▶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
- ② 공급의무자('24년 27개社)에게 신·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여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
- ▶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
 - ❷ 정 의 :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
 - - ※ 예시: 2MWh 발전, 가중치 1.5 → 2MW x 1.5 = 3 REC 발급
 -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년
- ▶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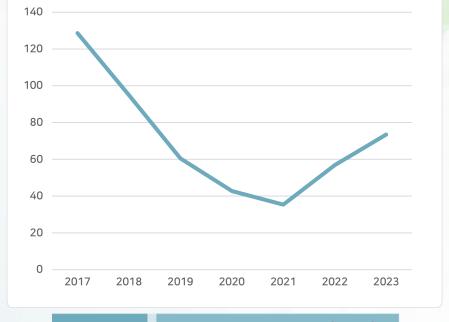


공급의무자는 자제조달(발전소 건설) 또는 외부조달(인증서 거래시장)을 통해 공급인증서(REC)구매

I.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배경

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= SMP + REC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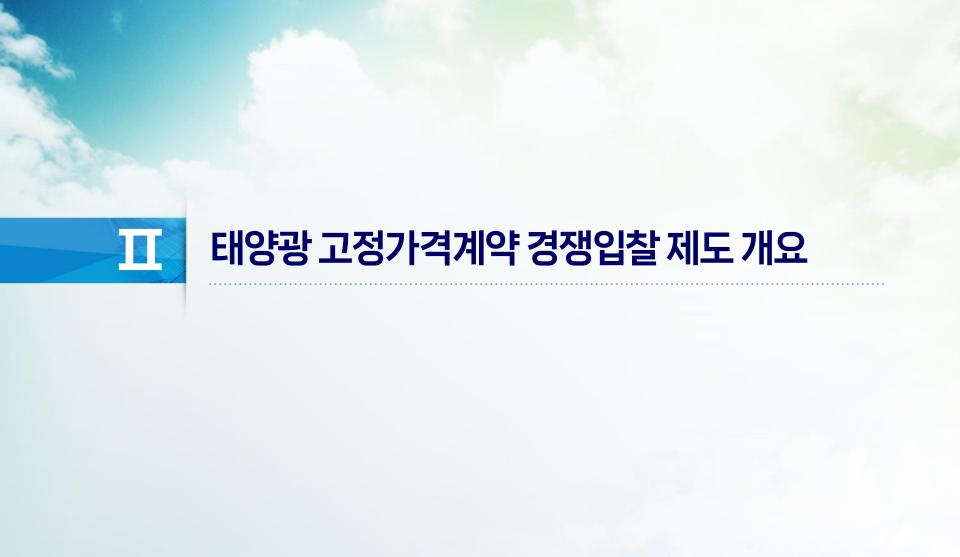


SMP

전력수요, 연료비 변동성

REC PREC 현물시장 변동성

① <u>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</u>보장하여 ②<u>투자 불확실성을 해소</u>하고 ③<u>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수단을 확보</u>하는「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」 마련(`17)



田.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

- ▶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?
 - "SMP+1REC" 합산가격으로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간 공급인증서 거래계약(20년) 체결하는 제도
 - 대상에너지원: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형 ESS
- ▶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근거

1, 법률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2.고시(산업통상자원부)

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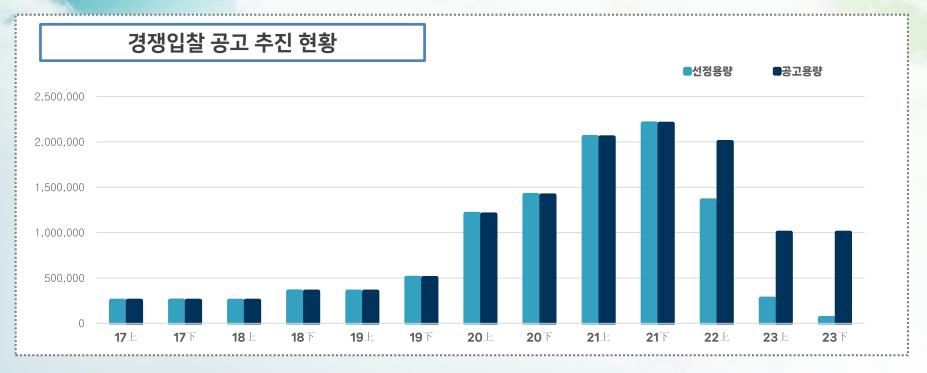
3. 운영규칙(신·재생에너지센터)
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-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주요사항
 - 참여대상 :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형 ESS 발전사업자

II.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

▶ 연도별 고정가격계약 추진현황



७ '17~'23 시행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12,810MW 공고 및 총 10,502MW 선정 (누적기준)

II.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

▶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운영절차

•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 산정 (위원회) 및 시업자 (공급의무자) 선정 의뢰 의뢰 •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에 입찰 공고 •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(On-line접수) 입찰 •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평기 •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점수 합이 높은 순서로 공고용량내산정 선정 •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선정 의뢰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배분 • 선정된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 체결(선정통보후 2개월) 계약



2024년 태양광 경쟁입찰 주요 개선 사항

▶ 최근 3개년 주요 개선사항

`21년 개선 사항

● (평가기준) 경제성·정책성 평가방식 강화

	기존		개정	
구분	계량	사업 내역서	계량	사업 내역서
기존시장	80점	20점	85점	15점
신규시장	80점	20점	85점	15점

- (계약기간) 기존 1개월 → 2개월 확대 적용
- (참여제한) 계약 미체결 시 3년간 참여불가

`22년 개선 사항

◉ (탄소검증) 탄소배출량 검증모듈 배점 강화

구분	기존(10점)	개정(15점)
	670kg·CO ₂ kW이타 : 10점	670kg·CO ₂ kW이타 : 15점
태 양 광 모 듈	670kg·CO ₂ kW초과 ~ 830kg·CO ₂ kW 이하:10점	670kg·CO ₂ kW초과 ~ 730kg·CO ₂ kW 이하 : 10점
탄 소 배 출 량	830kg·CO ₂ kW <i>초</i> 과 : 10점	730kg·CO ₂ kW초과 ~ 830kg·CO ₂ kW 이하: 5점
	-	830kg·CO ₂ kW초과, 미검증: 1점

● (참여제한) 계약 미체결 시 5년간 참여불가

`23년 개선 사항

(계약방식) '수익고정형' 계약으로 일원화

구분	기존	개정	
계약방식	수익고정형	수익고정형	
계탁6'즉	수익변동형	ナゴ上の の	

- (협동조합) 인센티브 조정(3점→2점) 으로
 비용 효율적 평가기반 마련
- (시장활성화) '발전소 설비 가동기간' 을 고려한 평가지표 반영(3점)
- (구간통일) 설비용량별 구간을 일원화

기존 제도 운영상 한계

- (탄소검증제) 등급간 격차 미반영으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
- ◉ (비정형화된 서류) 참여사업자별 상이한 서류제출로 인한 기준혼선
- (설치비용)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심리 위축
- ◉ (안전강화) 화재, 설비파손 등 발전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 미비

"2024년" 제도 개편

▶ 1.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품 인센티브 도입

현행 동일한 상한가격 적용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
탄소배출량(kg·CO₂/kW)	630이하	630초과 670이하	670초과 730이하	730초과 또는 미검증
2023년 상한가격	153,494 원/MWh			

- (변별력 부재) 탄소검증제 등급(구간)별 제품과 미제품간 동일한 상한가격 적용으로 가격평가의 공정성 논란
- ◉ (탄소중립) 고탄소배출제품으로 인한 저탄소제품 사용 유인책 마련 필요

개정

▶ 탄소배출량에 따른 우대가격(예시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
탄소배출량(kg·CO ₂ /kW)	630이하	630초과 670이하	670초과 730이하	730초과 또는 미검증
입찰가격 + "우대가격"	+ A원	+ B원	+ C원	0원

- ◎ (가격 질서확립) 탄소검증제 등급(구간)별 제품과 미제품간 "차등 우대가격" 적용으로 가격평가의 순기능 확보
- ※ 공고시 확정 예정

▶ 2.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지표 개선

간소화

자기자본비율 삭제

사업내역서 자금조달현황(계획)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

배점	3점	2.5점	2점
기준	25%이상	15%~25미만	15‰만

◉ (통일성부재)<mark>복잡</mark>하고 발전사업자미다상이하게제출

<삭제>

안전강화

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강화

사업내역서	배점	3점	2.5점	2점
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	걘	종합보험또는 종합공제계약서 (청약서)	화재보험또는 풍수해보험등 계약서(청약서)	미기입

- ◉ (안전미비) 자연재해, 화재 등 <mark>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</mark> 필요
- (요건확인) 보험 종류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장 범위가 상이

	배점	2점	1점	0점
N	걘	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증서	화재보험또는 CMI(기관기계) 보험증서	미/입

- ◉ (안전강화) 보험 未가입자 평가배점 삭제
- ◉ (요건확인)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CMI보험 반영

우대강화

· 탄소모듈 배출량 배점 상향

평가지표	총 배점 축소
발전소 개발 진행도 (발전사업허가 배점 삭제)	3점 → 2점
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	3점 → 2점

- 탄소저감을 위한 저탄소제품 활성화 방안 필요
- 발전사업허가는 입찰참여 필수조건으로 운영평가 강화 필요

계량평가	기존	신규
입찰가격	88 → 90	70
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	-	18 → 20

◉ (탄소중립) 고등급 탄소검증제품 사용 활성화 추진

▶ 2. 태양광 경쟁입찰 평가지표 개선

우대강화

▶ 농·축산·어업인,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

배점	3점	2점	
기준	농·축산·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, 신청 설비가 신·재생에너지센터 규칙 [별표1]의 "주민참여형 설비"인 경우	그외	

- 중·대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방안 필요
- ◉ '농·축산·어업인'참여 발전설비 우대사항 강화 필요

배점	3점	0점
기준	농·축산·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, 신청 설비가 신·재생에너지센터 규칙 [별표1]의 "주민참여형 설비"인 경우	그외

● '농·축산·어업인'과 '주민참여형' 발전설비의 참여 유도 및 우대사항 강화

▶ 3. 태양광 경쟁입찰 안정성 강화(검토)

가중치

▶ 입찰선정설비 가중치 적용기준

(현행) 설비확인시점의 가중치 기준을 적용



- (개정) 선정당시 가중치 기준을 적용
- 가중치 개정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최소화

▶ 4. 태양광 경쟁입찰 계약설비 금융지원

지원대상

- ▶ 계약체결 설비 금융지원 대상 적용
- 신재생 금융지원 대상에 고정가격계약 체결설비 미포함



- '25년 신재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예정
- 상시접수 대상으로 우대지원

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주요 사항

IV. 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주요 사항

주요 사항

- $m{ ilde{o}}$ 현물시장 안정화 SMP, REC 변동성 ightarrow 수익 불안정, PF 등 투자유치 애로 ightarrow 시장안정화 필요
 - 국가 REC, 대체이행, 이행연기 등 현행제도下 수단 활용
 - RE100 이행물량 등을 반영한 RPS 의무공급량 조정 등 규정 개정 예정('24.9.4, 행정예고)

- ∅ 정부 입찰 확대) 정부 주도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개편 방향 발표('24.5)
 - 향후 RPS 제도 개편 시 정부입찰 중심 신규설비 진입 예정
 - ▶ 기존 현물설비도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단계적 전환 유도 예정
 - \Box

'24년 하반기 중 RPS개선방안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추진



감사합니다

